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141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연번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369호)	조배숙의원 등 10인	2024.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2024.1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li><li>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1.24.) 상정/축조심사</li><li>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1.) 상정/축조심사</li><li>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li></ul>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3459호)	김한규의원 등 12인	2025.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11.11.)</li><li>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1.24.) 상정/축조심사</li><li>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1.) 상정/축조심사</li><li>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li></ul>

연 번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845호)	이해민의원 등 13인	2024.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li> <li>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8.)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li> </ul>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179호)	민형배의원 등 14인	2024.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li> <li>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8.)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li> </ul>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193호)	이광희의원 등 16인	2025.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12.5.)</li> <li>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8.)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li> </ul>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377호)	김기표의원 등 11인	2025.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12.5.)</li> <li>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8.)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li> </ul>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232호)	전용기의원 등 10인	2025.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12.5.)</li> <li>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8.)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li> </ul>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3649호)	백혜련의원 등 11인	2025.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12.5.)</li> </ul>

연 번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8.) 상정/추조심사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 원회(2025.12.5.)는 위

연번 1·2의 법률안 2건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 원회(2025.12.8.)는

위 연번 3~8의 법률안 6건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되, 연번 3~7의 법률안 5건은 대안에 주요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연번 8의 법률안 1건은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 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기로 함.

다.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는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위 연번 1~7의 법률안 7건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

되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13년 이전 확정된 판결서는 현행 규정상 열람·복사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 3). 그리고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 등의 준비를 위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부칙 제2조)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텔레그램 등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공조가 미흡하여 수사에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발효된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위 협약 제16조 등은 수사단계에서의 전자증거 멸실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위 협약 가입에 장해가 되고 있음.

이에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

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5조의2 신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의 제목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 · 복사)”를 “(판결서등의 열람 · 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등본, 증거목록”을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으로, “정보(이하)”를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지 아니한 판결서(일부만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

되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5항을 준용 한다.

제2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등에 기록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려 등 미

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청구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은 동일한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재차 요청할 수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 기간

내에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⑧ 보전요청 또는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보전요청, 보전조치 및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보전 연장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2013년 12월 3일까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판결서와 그 등본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하되, 구체적으로 열람·복사가 가능한 판결서등의 범위, 시기, 열람·복사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신 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생략)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⑥ (생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지 아니한 판결서(일부만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  
-----  
-----  
-----  
-----  
-----  
-----  
-----  
-----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  
-----  
-----.

⑦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

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려  
등 미리 압수 · 수색 · 검증영장  
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  
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  
우

②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  
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  
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

소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은 동일한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재차 요청할 수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안에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취소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8) 보전요청 또는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보전요청, 보전조치 및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보전 연장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

칙으로 정한다.